

公正去來法을 통해 본 새 經濟秩序

- 새 법의 骨子에 對한 解說과 함께 法施行에 따라
豫想되는 經濟形態의 變貌相을 中心으로 -

田 允 喆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總括課長〉

〈目 次〉

I. 立法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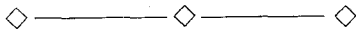
1. 經濟與件變化和 有效競爭體制導入
2. 獨寡占 弊害論爭

II. 公正去來法의 主要內容

1. 市場構造의 獨寡占化規制
2.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禁止
3. 不當한 共同行爲規制
4.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5.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III. 새 經濟秩序의 構築

1. 政府役割의 再定立
2. 競爭體制로의 經濟構造再編
3. 價格메커니즘의 活性化
4. 流通體系의 再整備
5. 技能人力養成 및 技術導入의 積極化
6. 消費者對抗勢力의 擴大堅實化



I. 立法背景

1. 經濟與件變化和 有效競爭體制導入

우리나라의 最近代經濟史를 約 30年間으로 볼 때 50年代는 6.25戰亂과 外國의 援助에 依存했던 關係로 크게 記錄될만한 事實이 없다.

따라서 60年代以後 우리 經濟의 自立化를 目

標로 하여 試圖되기 始作한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實施以來 20여년을 最近의 民族經濟史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期間 중 강력히 추진된 開發戰略에 힘입어 많은 成果를 얻기도 했으나 反面 적잖은 副作用이 隨伴되는 등 諸般 經濟與件의 심한 變化를 초래했다.

即 60年代初 韓國經濟의 開發初期段階에 있어서 經濟規模가 작고 民間企業의 能力이 微弱하였기 때문에 政府는 規模經濟의 利益을 實現할 수 있도록 特定企業에 對한 保護施策을 強化하고 競爭을 制限하는 開發戰略을 써 왔으며 한편으로는 企業의 零細性에 따라 不足된 物量을 均衡的으로 配分하기 爲해 價格과 需給에 對한 規制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開發政策으로 우리 經濟는 急速한 輸出增大를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類例없는 高度成長을 達成할 수 있었으며 經濟構造 또한 複雜多樣化되었다.

經濟與件의 이같은 變化로 過去의 保護 및 規制手段은 이제 그 管理能力을 喪失하기에 이르렀으며 經濟構造를 歪曲化시키는 副作用마저 우려하게 됐다.

다시 말해 保護와 競爭制限政策은 가격이나 品質競爭을 沮害하고 低生産性限界企業을 溫存시킴으로써 企業의 創意力 위축 및 인플레이 構造를 定着시켜 經濟體質을 弱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一部企業에 對한 經濟力의 過度한 집중은 分配構造를 惡化시키고 이는 生活道德 등 價値觀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現在의 經濟與件을 前提로 할 때 保護

와 競爭制限의 開發戰略은 經濟發展을 促進하기 보다 沮害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다른 角度에서 問題意識을 찾아보자. 第1次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된 1962 년도의 GNP에 대한 貿易規模의 占有比重은 22.7%이었으나 1980 년도의 比重은 무려 87.3%로 伸張됨으로써 우리 經濟는 宿命的인 貿易依存型으로 정착되고 말았다.

한편 對外的 狀況은 資源내셔널리즘의 심화와 新保護主義立場의 대두로 國際貿易環境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60년 以後 70년대 中盤까지 賦存資源이 없어도 括目할만한 輸出伸張을 持續할 수 있었던 것은 良質의 저렴한 勞動力을 많이 保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 重化學工業宣言 以後 技能工 스카우트 現象이 일면서 全般的인 賃金浮上을 가져왔고 그 결과 우리의 對外競爭力은 競爭關係에 있는 싱가포르·대만·홍콩 등에 比하여 떨어지는 立場에 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莫大한 人力을 保有하고 있는 中共이 經濟運用方式를 開放體制로 轉換하고 低賃金を 背景으로 勞動集約的인 産業에 침투, 우리의 무서운 競爭相對로 등장돼 있다.

우리의 對內外經濟與件이 이와 같다면 國際化時代에 있어 開放經濟體制에 適應하고 國際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대응책은 經濟構造를 有效競爭體制로 轉換, 品質 및 價格競爭을 通해 經濟體質을 強化하는 것과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높여 經濟의 能率을 提高시키는 것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러한 論據가 1980년 12월 立法會議를 通過하여 1981년 4월부터 施行하게 된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의 理念的 基礎가 된다.

2. 獨寡占 弊害論爭

獨寡占構造에 競爭原理를 適用하고 市場行動에 있어서의 濫用行爲 規制를 主要方針으로 하고 있는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의 立案過程에서 學界, 言論界 및 業界에서 그 是

非에 關한 論爭이 있어 筆者로서는 獨寡占市場構造가 주는 弊害나 利點에 對한 比較檢討가 필요하였다. 獨寡占規制是非는 經濟理論上의 問題이긴 하지만 그러한 理論을 우리 經濟現實과 믹스시켜 考察함으로써 우리의 立場을 整理, 그 타당성을 認定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獨寡占擁護論者는 「윈」學派의 指導的 理論經濟學者인 쉘페터(Shumpeter·J·A 1833~1950) 教授이다. 「쉘페터」教授의 獨寡占擁護論을 要約하면 獨寡占은 規模經濟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고 技術革新이 促進된다는데 그 理論의 根據를 두고 있다. 여기서 規模經濟利益이란 生産規模의 擴大로 平均生産費를 引下시킴으로써 國際競爭力面에 有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理論은 극히 制限된 범위내에서만 妥當한 理論일 수밖에 없다. 即 最適單位를 超過하는 規模擴大는 오히려 平均生産費를 增加시키며 複合企業 또는 多工場企業은 規模經濟의 利益 實現이 不可能하다는 反論이 成立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技術革新을 促進시킬 수 있다는 立論은 獨寡占企業의 경우 超過利潤을 얻을 수 있어 이를 研究開發費에 投資함으로써 技術開發을 可能케 한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獨寡占價格은 上方彈力的이고 下方硬直性を 가지고 있어 獨寡占 利潤의 繼續的인 享受가 可能하게 되며 이러한 價格메커니즘下에 있는 獨寡占企業은 事實上 技術革新의 誘因이 없어 競爭構造에 있어서 보다 정체성이 크고 新商品 開發에 消極的이라는 反論이 提起되고 있다.

이와같이 規模經濟利益追求의 可能性이나 技術革新이 促進된다는 理論에 대한 反論이외에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獨寡占企業이 國民經濟에 준 여러가지 弊害를 經驗한 바 있다. 即 獨寡占企業은 市場支配的 地位를 濫用함으로써 市場秩序를 교란시키는 등 많은 不公正去來行爲를 하게 되고 原價節減이나 生産性向上努力을 소홀히 하여 經濟能率을 沮害,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키며 獨占利潤의 繼續的인 保障이 가능한 反面 상대적으로 消費者權益을 侵害하게 되고 市場의 自動調節機能을 沮害하여 需給 및 價格기능을 硬直化시킴으로써 資源配分을 歪曲化시키고

또한 小數企業에의 經濟力過度集中은 分配構造를 惡化시키질 뿐만 아니라 企業體質을 弱화시키기도 한다.

以上 要約컨대 獨寡占 構造는 企業自體의 創意力 開發, 消費者的 權益, 國民經濟의 均衡의 發展을 爲하여 이롭다기보다는 弊害가 크다는 點에 異論이 있을 수 없다.

II. 公正去來法の의 主要内容

1. 市場構造의 獨寡占化規制

우리나라 市場構造는 原因이야 어떻게 個別商品의 市場集中度 및 少數企業에 依한 經濟力集中現象이 加速化되어 왔다. 숫자로 보면 1974년도 全體品目 1천9백79個中 獨寡占型이 69.8%를 占하였으나 1979년도에는 89%로 늘어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個別商品의 市場集中度 深化나 少數企業에 依한 經濟力過度集中現象은 各種 企業結合에 依하여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의 企業結合 類型은 첫째, 相互競爭關係에 있는 企業을 單獨 또는 共同으로 引受한 事例 둘째, 競爭關係에 있는 企業을 系列企業을 통해 引受한 事例 셋째, 同一製品生産企業이 多數있는데 그중 1個企業이 原料 또는 中間財生産企業을 獨占의으로 設立하거나 引受한 事例 넷째,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原料 또는 中間財에 關한 既存企業이 多數있는데도 不拘하고 自體下請企業을 設立하거나 引受한 事例 다섯째, 自體生産製品의 再販賣價格 維持를 爲한 流通 기구의 支配事例 여섯째, 市場支配의 事業者가 中小企業에 屬하는 業種을 引受하는 事例 등이 그것이며 他會社의 株式를 取得하거나 任職員의 地位兼任, 또는 新設合併이나 吸收合併, 營業讓受, 會社의 新設 등을 企業結合의 商法上 手段으로 活用해 왔다.

그래서 公正去來法은 이와같은 手段을 통해 이루어진 企業結合이 競爭을 制限하는 獨寡占構造를 形成하게 되는 경우 이를 禁止시키고 企業이 위에 열거한 手段을 통해 企業結合을 하는 경우 申告를 의무화함으로써 企業結合規制를 效

率의으로 할 수 있도록 7~8條에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2. 市場支配의 地位의 濫用禁止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1979년도 市場集中度 實態는 獨寡占型이 89%이다. 이를 競爭構造로 轉換시키려면 獨占型이나 極高位寡占型에 대한 分割이 要求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經濟에 심각한 副作用을 물고 올 우려가 커 既存獨寡占構造는 認定해 주기로 하였다.

1947년도 日本이 私의 獨占禁止 및 公正去來確保에 關한 法律을 制定하여 施行할 때 재벌을 分割하는 措置를 斷行함으로써 競爭體制로의 構造轉換을 強行하였다. 이는 맥아더 占領治下였기 때문에 可能하였을 것으로 思料된다. 어떻게 우리 公正去來法은 既存獨寡占의 경우 이를 認定하되 그 支配地位의 濫用現象은 철저히 規制토록 되어 있다.

即 商品의 價格을 不當하게 決定하거나 販賣數量을 調節하는 行爲,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不當하게 妨害하는 行爲,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參加를 妨害하거나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事業者를 排除하기 爲하여 施設을 新設 또는 增設하는 行爲 등 獨寡占地位의 弊害를 最小化하도록 하기 위해 法으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같은 弊害는 大企業이 아니고는 不可能하기 때문에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基準은 國內總供給額이 300억원 以上으로써 1社의 市場占有率이 50% 以上, 3社의 市場占有率이 70% 以上인 경우로 하였다.

價格監視對象에 있어 公正去來法 第3條 第1號의 價格濫用行爲規制對象은 市場支配의 事業者中 占有率이 50% 以上인 大企業으로 局限하였으며 50% 미만인 市場支配의 事業者의 경우에는 同調의으로 價格引上을 하는 경우에만 局限 規制토록 하였다.

同調的인 價格引上 與否는 3個月 以內에 價格을 편승 引上하되 引上率의 차이가 20% 以內일 경우에는 일단 同調의 引上으로 간주하도록 明文化하였다.

3. 不當한 共同行爲規制

共同行爲는 事業者間에 各種 카르텔을 結成하는 法律行爲이다.

例컨대 事業者間에 販賣價格을 共同으로 維持引上하는 行爲, 投資防止를 爲한 價格談合行爲, 價格維持를 爲한 生産出庫調節行爲, 販賣地域을 分割하거나 去來相對方을 制限하여 去來先을 維持하기 爲한 協定을 締結하는 形態가 그것이다.

이와같은 共同行爲는 競爭事業者間에 價格이나 品質競爭을 沮害하는 것이기 때문에 公正去來法은 競爭을 制限하는 各種共同行爲를 規制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共同行爲를 登錄하도록 義務化하고 登錄되지 아니한 共同行爲는 이를 無效로 하였다.

다만 競爭을 制限하는 共同行爲라고 하더라도 不況克服이나 産業合理化등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認定하되 그 認定要件을 強化하였다.

即 不況克服의 경우 첫째, 特定商品의 需要가 相當期間 減少하고 둘째, 당해 商品의 價格이 3個月 以上 平均生産費를 下廻하며 셋째, 당해 事業分野의 相當數企業이 事業活動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넷째, 企業의 合理化로서는 이를 克服할 수 없는 경우에 限定하여 不況克服카르텔을 認定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카르텔 내지 共同行爲는 事業者團體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경우도 많다. 이는 事業者團體가 會員社의 新設이나 增設을 制限하고, 販賣價格을 同一하게 維持하며 生産製品의 品目を 制限하여 商品을 差別化하는 등의 競爭沮害行爲를 말한다.

따라서 公正去來法 第17條 및 第18條는 이러한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또는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不公正去來行爲란 市場行動에 있어 自由로운 競爭의 條件을 沮害하는 行爲이다. 이러한 不公正去來行爲는 一般事業分野에 共通의으로 適用

되는 類型이 있고 百貨店 등 特定事業分野에만 通用되는 경우가 있으며 下都給代金の 支拂 지연 등 特殊行爲에 適用되는 類型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具體的인 類型의 區分은 經濟企劃院이 別途로 告示하게 되어 있다. 一般指定으로 例示할 수 있는 類型은 不當한 去來拒絶, 去來條件의 差別取扱, 集團排斥, 差別對價, 不當廉賣 또는 不當高價買占, 不當한 顧客의 誘引, 不當表示, 不當한 去來強制, 優越的 地位의 濫用, 不當排他條件附去來, 不當拘束條件附去來 등이 예상된다.

또한 카르텔性格과 不公正去來行爲性格을 同時에 가지고 있는 再販賣價格 維持行爲에 대하여 說明할 必要도 있겠다.

再販賣價格이란 商品을 生産하는 事業者가 都小賣價格을 미리 定하여 그 價格대로 販賣할 것을 強制하는 規約이나 制限條件을 부쳐 去來하도록 하는 行爲이다. 이러한 再販賣價格制度는 生産者가 都小賣價格을 定하여 이를 強行함으로써 都小賣段階에서의 價格競爭을 排除하게 되고, 流通構造의 整備 내지 近代化에 따른 流通코스트의 節減이 消費者에 還元되지 않아 消費者利益을 侵害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再販賣價格 維持行爲에 대하여는 이를 엄격히 規制하되 一般消費者가 日常使用하는 品目으로서 流通過程에서의 消費者價格을 미리 定하여 주는 것이 消費者의 利益에 符合되는 경우에는 그 品目を 定하여 이를 認定하되 再販賣價格의 마진율이나 維持協定內容에 關하여 規制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우리나라는 60年代 以後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해소하고 不足技術을 集積하기 爲하여 不當條件을 감수하면서 많은 外資 및 技術導入을 進行해 왔다. 이 過程에서 우리는 어느程度 成長 잠재력을 保有하게 되었고 지금 轉換期를 맞아 資本自由化를 시도하는 段階에까지 와있어 앞으로 商業借款이나 技術導入에 關한 政府事前規制가 없어지고 自由化될 可能性이 많다.

外資導入에 대한 事前規制가 제도화돼 왔던 지난 20년동안에도 不公正去來條件이나 우리나라

라 實物經濟를 당해 分野에서 制約하는 條件을 붙여 왔던 外國人 事業者가 資本自由化 段階에서는 더욱더 많은 制約條件을 強化할 것으로 豫測된다. 따라서 앞으로 外資導入法에 依한 借款, 合作投資, 技術導入契約이나 輸入代理店契約 또는 長期輸入契約時 國際商慣習을 무시한 不公正한 去來條件이나 競爭을 制限하는 去來條件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抑制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러한 裝置를 마련함으로써 國內 事業者가 外國人 事業者와 國際去來에 關한 契約을 締結할 경우 유리한 立場에서 協商이 可能할 것으로 思料된다.

Ⅲ. 새 經濟秩序의 構築

政府는 80년대 經濟運用方式을 民間主導로 轉換시키기 爲하여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을 制定, 施行段階에 들어갔으며 이와 함께 金融自律化, 産業支援制度의 改編을 推進하고 있다.

民間主導의 經濟運用方式이란 完全放任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競技規則(rule of game)을 定하고 그 範圍內에서 自由롭게 運用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獨禁政策을 포함하여 政府가 現在 推進하고 있는 政策이 定着될 경우 우리 經濟秩序에는 많은 變革이 일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1. 政府役割의 再定立

市場經濟體制를 確立함으로써 政府가 過去에 主導해 왔던 이른바 官主導經濟體制가 不可避變貌하게 되었다. 결국 政府는 게임의 룰(rule)을 設定하고 이를 監視하는 中立的立場을 갖게 될 것이며 經濟에 직접 介入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勿論 市場經濟의 確立이 成長의 持續을 爲한 基本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市場經濟體制가 우리의 모든 經濟課題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진대 政府는 政策의인 次元에서 國民福祉, 社會間接資本 農業部門에 대하여는 直·間接으로 그 役割을 擴大強化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部

門을 除外하고는 漸次 政府의 役割을 單純化·中立化시켜야 한다.

따라서 過去 20餘年間 政府 各部處에서 運用하여 오던 各種經濟法令이나 行政制度는 이러한 觀點에서 再整備을 斷行, 市場機能이 活性化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게 될 것이다.

2. 競爭體制로의 經濟構造再編

이 法施行后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企業結合을 抑制함으로써 獨寡占化하는 過程을 原因의으로 차단시키게 되어 競爭體制를 誘導하게 될 것이다. 또 輸入의 段階의 自由化 措置도 國內 獨寡占事業體의 競爭力培養 및 經濟의 國際化를 爲해 外換·資本自由化와 함께 轉換期에 즈음하여 果敢히 斷行되어야 한다. 西獨·日本·대만의 基調轉換期의 政策對應中 共通的으로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對外自由化의 擴大였다.

우리 經濟는 그간의 成長을 통해 對外競爭力을 어느 程度 確保하였으므로 果敢하게 對外自由化措置를 斷行함으로써 業界를 相對로 우리의 人的·物的資源을 國際的인 次元에서 活用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89%에 해당하는 既存獨寡占構造를 競爭體制로 誘導하는 效果的인 手段이 될 것이다.

3. 價格메커니즘의 活性化

公正去來法은 價格管理에 關한 法律이 아니며 오히려 價格決定은 需給에 맡기는 立場에서 나온 制度이다. 지난 20年間 政府는 직접적·능동적으로 價格規制를 해왔다. 그러나 價格에 대한 直接規制는 價格體系의 硬直化로 二重價格의 形成 등 流通上의 混亂을 惹起하고 需給不安時 買占賣惜 및 暗去來를 盛行시키며, 不況時에는 政府가 價格을 支持하는 印象을 줌으로써 政府의 物價管理政策에 대한 信任度를 저하시키는 한편 企業側面에선 品質向上 등 生産性向上努力을 忌避하게 될 뿐 아니라 新製品開發에 消極的인 자세를 남게 된다.

따라서 物價引上이 基本的인 要素費用의 上昇 또는 超過需要的 發生에 依한 것이라면 오히려

供給能力을 擴大하도록 業界를 誘導하거나 海外 競爭力을 導入함으로써 所要物量을 最大限 確保하는 方向에서 管理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價格規制를 原則적으로 忌避하는 公正去來法의 施行으로 價格메커니즘의 活性化가 最大限으로 발휘될 것이다. 다만 이 制度의 定着段階에서 短期的으로는 價格의 不當한 상승이 시도되는 것을 抑制하기 爲해 당분간 行政指導가 계속되는 것은 不可避하다고 하겠다.

4. 流通體系의 再整備

우리나라 既存의 流通構造는 前近代性을 免치 못하고 있으며 比較的 近代化한 流通組織이라고 하더라도 生産者의 支配下에 놓임으로써 公正한 競爭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流通組織으로 現在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形態가 特約代理店形態이며 各業種別, 事業體別로 特約代理店制度를 活用함으로써 流通마진을 높이는 事例가 많다. 뿐만 아니라 生産者는 代理店事業者에게 過度한 保證金을 要求하는가 하면 代理店事業者는 自己以外的 流通業者에게 商品出荷를 하지 못하도록 生産者에게 強要하고 있다.

競爭政策은 商品의 生産, 出荷段階뿐 아니라 流通段階에도 침투되어야 한다. 따라서 公正去來法上의 不公正去來行爲 團束條項을 적절히 活用함으로써 流通産業을 開發하고 流通段階에 있어서의 有效競爭體制가 確立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技能人力養成 및 技術導入의 積極化

科學技術水準의 向上이 없이는 經濟發展이 어렵다는 것은 先進國의 事例를 보더라도 明白하다. 特히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長期的인 經濟發展戰略을 우수한 人力의 輩出과 高度化된 産業技術의 開發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重化學工業의 建設이나 製品의 高級化도 技術의 蓄積이 없이는 不可能하며 우리의 經濟規模가 擴大되어 갈수록 技術·技能人力에 對한 需要는 急激히

增大되어 갈 것이다. 技能人力의 養成못지 않게 積極的인 技術導入도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産業技術需要가 급격히 增加하는데 比하여 우리의 自體開發能力에는 限界가 있으며 또한 自體開發보다는 導入이 훨씬 有利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企業은 On-the-job-training을 통하여 技能人力의 自體養成을 強化해야 할 것이고 政府는 競爭으로 인한 脫落企業에서 發生하는 摩擦의 失業者 내지는 人力需給上의 不均衡 問題를 해결하기 爲하여 Off-the-job-training 制를 적극 活用해야 할 것이다.

또한 海外先進技術導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諸般條件을 造成해야 할 것이다.

6. 消費者對抗勢力의 擴大堅實化

우리나라 消費者의 意識構造가 落後돼 있으며 消費者의 團合된 對抗勢力도 미약하다는 事實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公正去來制度의 早期定着을 爲하여는 政府와 企業의 役割도 重要하지만 消費者의 合理的인 消費行動, 積極的인 消費者 主權意識이 重要하다. 또한 生産者에 대항할 수 있는 對抗勢力의 育成이 요망된다.

따라서 經濟企劃院에 消費者保護課를 設置運用하고 있으며 여기서 消費者教育을 強化함으로써 消費者의 意識構造改編을 통해 消費者告發精神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이로 因하여 民間主導型經濟에서 나타날 수 있는 企業倫理上의 問題點을 生産者와 消費者가 힘의 均衡을 통해 調整 타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確信한다.

